

● 제285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보호 및 자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2. 26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병도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370

I. 조례안 개요

1. 발의자 및 제안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이병도 의원(찬성 21명)
- 나. 발 의 일 : 2019. 1. 31.
- 다. 회 부 일 : 2018. 2. 7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데이트폭력, 스토킹,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 폭력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,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외에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(법률 제16086호, 2018. 12. 24. 제정, 2019. 12. 25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,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

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조항의 근거 상위법 규정으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를 추가함.(안 제1조)
- 여성폭력'의 정의를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'여성폭력' 정의에 따르도록 함.(안 제2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해당 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조례안의 개요

- 최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, 현행 법체계에서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이 곤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음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「성폭력방지기본법」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86호, 2018. 12. 24., 제정]에 이 제정된 바 있음.
- 또한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, 강간등 상해·치상 등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추행 범죄가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,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피해신고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¹⁾

<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(2010년~2015년)>

(단위 : 건, %)

연도	강간 ¹⁾	강제 추행	강간 등 ²⁾	강간등 살인/치사	강간등 상해/치상	특수강간 강간 등	카메라 등 이용촬영	성적목적 장소침입	통신매체 이용음란	공동밀집 장소추행	계
2010	4,384 [21.3]	7,314 [35.5]	3,234 [15.7]	9 [0.0]	1,573 [7.6]	293 [1.4]	1,153 [5.6]	-	1,031 [5.0]	1,593 [7.7]	20,584 [100]
2011	4,425 [20.0]	8,535 [38.5]	3,206 [14.5]	8 [0.0]	1,483 [6.7]	285 [1.3]	1,565 [7.1]	-	911 [4.1]	1,750 [7.9]	22,168 [100]
2012	4,349 [18.6]	10,949 [46.9]	1,937 [8.2]	13 [0.1]	1,208 [5.2]	209 [0.9]	2,462 [10.5]	-	917 [4.0]	1,332 [5.7]	23,365 [100]

1) 2016년 범죄분석(대검찰청)

연도	강간 ¹⁾	강제 추행	강간 등 ²⁾	강간등 살인/치사	강간등 상해/치상	특수강도 강간 등	카메라 등 이용촬영	성적목적 장소침입	통신매체 이용음란	공동밀집 장소추행	계
2013	5,359 [18.4]	13,236 [45.5]	1,186 [4.0]	22 [0.1]	1,094 [3.8]	150 [0.5]	4,903 [16.9]	214 [0.7]	1,416 [4.9]	1,517 [5.2]	29,090 [100]
2014	5,092 [17.1]	12,849 [42.2]	624 [2.0]	8 [0.0]	872 [2.9]	123 [0.4]	6,735 [24.1]	470 [1.5]	1,254 [4.1]	1,838 [6.1]	29,863 [100]
2015	5,274 [17.0]	13,266 [42.7]	283 [0.9]	6 [0.0]	849 [2.7]	72 [0.2]	7,730 [24.9]	543 [1.7]	1,139 [3.7]	1,901 [6.1]	31,063 [100]

* 자료: 2016년 범죄분석, 대검찰청;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.

주: 1) 강간에는 간음이 포함되어 있음

2) 강간등은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

- 이에 상위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 확장을 확장하고, 이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여성폭력의 개념 확대

- 개정안에서는 새로 제정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86호, 2018. 12. 24., 제정]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폭력의 개념을 인용하여, 2011년에 현행 조례 제정 당시 “가정 폭력, 성폭력, 성매매”로 한정하여 명시하였던 여성폭력의 개념을 시대에 흐름에 맞춰 “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”까지로 확장하고 있는 바, 이는 관련 상위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“여성폭력” 정의>

현행	개정안
여성의 인권과 생명권, 자유권,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,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<u>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</u>	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<u>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</u>

□ 기타 검토사항

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제4조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의 의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, 개정안의 목적조항(안 제1조) 및 시장의 책무조항(안 제3조제4항)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제4조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- 한편 개정안(안 제2조제2호~제4호)은 정의규정의 상위법 인용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, 현행 조례에서 관련 상위법의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조항 번호를 명시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같은 조의 해당 개념이 규정된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2. “가정폭력”이라 함은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정의를 말한다.	2. ----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-----.
3.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정의를 말한다.	3. ----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-----.
4. “성매매”라 함은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정의를 말한다.	4. ----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-----.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개념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, 이는 새로 제정된 상위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임.